

"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

® 04373 서울시 용신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8F [http://www.kma.org]/전화(02)6350−(내선번호)/전송(02)796−4487 의무법제국장 김상구(6573)/ 의무팀장 이재용(6540)/ 과장 김철욱(6536)/ E−mail: leokma0817@naver.com

문서번호 대의협 제0652-03890호

시행일자 2022. 7. 7.

수 신 수신처 참조(의료폐기물 담당자)

참 조

제 목 2022년도 의료폐기물 배출자 법정교육 실시 결과 통보(1차) 및 향후 교육일정 안내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관련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나. 우리협회 대의협 제0652-14407호(2022.03.07)
- 3. 상기 관련근거에 따라 우리협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의료폐기물 배출자 법정 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며, 2022년 남은 교육 일정을 안내드리오니 의료기관을 신규 개설했거나 교육을 미이수한 배출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가. 교육 결과 보고(1차)

- 교육기간: 2022.03.21.(월) ~ 2022.06.30.(목)
- 교육 이수자: 457명(붙임참조)

지역(가나다순)	이수자(단위: 명)
강원	11
경기	118
경남	24
경북	15
광주	17
대구	33
대전	8
부산	19
서울	107
세종	4

총 이수자	457
기타	17
충북	8
충남	16
제주	1
전북	21
전남	19
인천	15
울산	4

나. 2022년 교육일정 안내

- 교육과정명 :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 교육일정 : 2022.03.21.(월) ~ 2022.12.26.(월)

※ 2022.12.26.(월)까지 강의를 모두 듣고 [E-test]를 완료하여야 이수로 인정됨.

※ 교육기간이 지난 후 교육을 완료한 자는 미이수 처리됨.

- 교육 대상자

-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병, 의원 등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의료폐기물 배출자(의료기관)
- 교육 수강 안내 : 상세내용 붙임자료 참조
 - 교육사이트: 대한의사협회 KMA 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kma.org)

붙임 : 1. 2022년도 의료폐기물 배출자 법정교육 이수자 명단(457명) 1부.

2. 수강안내서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제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

수신처: 16개 시도의사회장, 각과개원의협의회장, 서울특별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